

심사보고서

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처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처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566
----------	-----

2024. 4. 30.(화)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충청북도교육감

나. 제출일자: 2024년 4월 12일

다. 회부일자: 2024년 4월 12일

라. 상정일자: 2024년 4월 23일

(제41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감사관 안병대)

가. 제안이유

○ 「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처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설치된 위원회가 안전 처리 등 운영 실적이 저조하여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함으로써 위원회 구성·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처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위원회 비상설화 정비
 - (제10조제3항) 「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처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를 안건이 생기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하도록 하는 한편 임기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정비

3.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신원호)

가. 조례 개정 이유 검토

- 본 개정 조례안은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상설 운영하던 ‘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보상심의위원회’ (이하 ‘이원회’라 한다)를 심의 안건 발생 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하는 비상설위원회로 운영 체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 현 정부는 ‘정부 운영 효율화와 위원회 정비’를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2022년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정부는 2024년 3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경감과 효율적인 조직 운영 체계 구축’을 위해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지자체 위원회 3,000개 정비를 목표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을 안내하고,

-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운영의 실효성 등에 대한 점검을 통하여 회의 실적이 저조하거나 행정력과 예산집행 등의 측면에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각종 위원회를 축소·통폐합, 비상설 운영 등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 이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충청북도교육청의 위원회는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 사례 저조로 회의실적이 부진하여 상설위원회로 구성·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낮은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현재 상설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운영체계를 변경하는 본 조례 개정은 행정업무 경감과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타당하다 판단됨.

나. 개정 주요 내용 검토

-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제3항에서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도록’ 한 현 조례 규정을 ‘안전 발생 시 위원회를 구성하고, 안전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하도록’ 변경하였음.
- 이는 위원회가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 사례 저조로 인하여 최근 3년 이상 미 개최 되는 등 회의 운영 실적이 저조한 측면을 고려하여 상설 운영하던 위원회를 비상설화 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막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 것으로 사료됨.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보상심의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증진과 교직원의 업무경감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필요성이 인정되며,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조문체계가 법체계에 부합하여 법령에 위배 되는 사항이 없어 타당한 조례 개정이라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 론 요 지: “생략”

6.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처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처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처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심의위원회 위원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 시행 전일 만료된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② (생략)</p> <p><u>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u></p> <p>④·⑤ (생략)</p>	<p>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p> <p><u>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u></p> <p>④·⑤ (현행과 같음)</p>

관계법령

□ 「충청북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0. 8. 7.] [충청북도조례 제4436호, 2020. 8. 7., 제정]

제15조(관리 및 정비) ①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원회 활동내역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 설치 목적상 비공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1. 위원회의 회의 개최 실적
2. 위원회의 자문, 심의·의결 등 주요 결정 사항
3. 위원회의 예산집행 내역
4. 위원회 구성·운영의 변경사항 등

② 총괄부서의 장은 교육청에 설치된 전체 위원회 및 위원 현황을 관리하고, 위원회 활동내역서를 점검하여 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통합 또는 폐지하여 정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설립 목적이 달성된 경우
2. 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되었거나 설치근거가 소멸된 경우
3.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된 경우
4. **2년 이상 위원회 개최 및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다만, 법령 등에 따라 의무적으로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는 제외함)
5. 위원회의 존속기한이 경과한 경우

③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가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을 경우 관계 법령의 개정을 건의하거나 위원회의 정비 또는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처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충청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개정안은 충청북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목적·기능상 존속이 필요하나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원회를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하는 비상설 위원회로 변경하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비용 발생 요인이 없음

4. 작성자 : 감사관 안병대